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제출연월일	2009. 5. .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은 중단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강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의 뜻을 변경함(안 제3조제4호).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자녀 → 둘째아이 이상 자녀
- 나.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따른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3조제9호).
-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 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50만원 이내 지원 조항과 이의 지원 대상 자격,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 라.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을 변경함(안 제11조, 제12조).
- 당초 :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
  - 변경 : 둘째아이인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현행과 같음

마.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내용과 업무관장 부서를 신설함(안 제20조제7호).

-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115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3. 24. ~ 2009. 4.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셋째아이”를 “둘째아이”로 한다.

제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셋째”를 “둘째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둘째아이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셋째아이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금액) 영유아양육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둘째아이 :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2. 셋째아이 이상 :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제20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본문 생략)</p> <p>1. ~ 3. (생 략)</p> <p>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셋째아이</u>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p> <p>5. ~ 8. (생 략)</p> <p><u>&lt;신 설&gt;</u></p> <p>9. (생 략)</p> <p><u>10.</u> (생 략)</p>	<p>제3조(정의)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둘째아이</u> ----- -----</p> <p>5. ~ 8. (현행과 같음)</p> <p><u>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u></p> <p><u>10.</u> (현행 제9호와 같음)</p> <p><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본문 생략)</p> <p>1. ~ 3. (생 략)</p> <p><u>4. 임신부 건강관리비 : 50만원 이내</u></p> <p>5. ~ 6. (생 략)</p>	<p>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u>의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 한한다. 다만, 제5조 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지원방법) (본문 생략)</p> <p>1. ~ 3. (생략)</p> <p><u>4.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2회 분할 지급하되 1차 지원은 임부등록 후 지급하고, 2차 지원은 군에 출생신고 후 지급한다. 다만, 임산부가 전입자인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부터 출산시까지 1개월당 5만원씩 지급한다.</u></p> <p>5. ~ 6. (생략)</p>	<p>제7조(지원방법)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u>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u>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u>셋째</u>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p> <p>② <u>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u></p>	<p>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p> <p>----- <u>둘째아이</u> -----</p> <p>-----</p> <p>-----.</p> <p>② <u>영유아양육비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u></p> <p>1. <u>둘째아이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지원금액) <u>지원금액은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한다.</u></p>	<p><u>2. 셋째아이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u></p> <p>제12조(지원금액) <u>영유아양육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u></p> <p><u>1. 둘째아이 :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u></p> <p><u>2. 셋째아이 이상 :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u></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본문 생략) 1. ~ 6. (생략) <u>&lt;신설&gt;</u></p> <p><u>7. (생략)</u> <u>8. (생략)</u> <u>9. (생략)</u> <u>10. (생략)</u></p>	<p>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본문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1010추진단)</u> <u>8. (현행 제7호와 같음)</u> <u>9. (현행 제8호와 같음)</u> <u>10. (현행 제9호와 같음)</u> <u>11. (현행 제10호와 같음)</u></p>

## 관계 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9.2.8, 2005.12.7>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3. 피임기술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등에 관한 사항